

가정상담

7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9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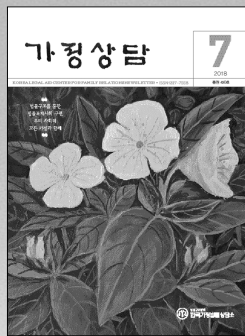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본소의 임시이사회가
지난 6월 21일
개최되어 인사규정의
일부개정안 통과와 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유임안이 의결되었다.
(관련기사 31면)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9일 본소 강당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을 주제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관련내용 6면, 관련기사 31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황금달맞이꽃〉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I |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❶
- 22 • 특집 II |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 심포지엄 ❷
- 28 • 인터넷 상담
- 29 • 좋은 책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
- 30 • 결혼과 인생(185) 만화일기
불쌍한 딸 _ 장차현실
- 31 • 상담소 소식
- 34 • 지부 소식
- 36 • 상담통계
-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국가의 책무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기류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평화, 공존의 시대를 향한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에 가까워진 듯합니다. 이와 같이 화해와 번영을 기대하는 시대의 조류와 더불어 우리에게 ‘일상’이 있고, 한 사람 또 한 가정의 일상이란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만큼 혹은 그 흐름보다 더 소중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최근 들어 맹자의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말을 자주 생각합니다. ‘항산(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항심(일정한 마음)이 없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맹자가 고향에 돌아와 만년을 보냈는데, 가까이 있는 등나라의 문공이 맹자를 초빙해 나라 살림에 관해 물었을 때, 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성의 일은 늦출 수 없는 것들이니... 백성들이 사는 방도는 일정한 생업이 있으면 일정한 마음이 있고,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 등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다음에 따라가서 형벌을 가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양혜왕 상’ 편에도 나옵니다. 맹자가

언급한 국가 최고통치자의 중요한 책무는 백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차례 상담소를 찾은 노년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아내만 왔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로 경비 일을 하는 남편은 백 만 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아 아내에게 몇 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주면서 돈을 많이 쓴다고 잔소리를 합니다. 이에 대해 아내가 불만을 털어 놓자 오랜만에 몇 십 만원의 목돈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양파 한 망을 사고 마늘도 단으로 샀습니다. 살림에 필요하지만 그간 돈이 없어 사지 못했던 것을 조금 갖추고 나니 돈은 금방 사라졌고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다시 상담소를 찾은 것입니다. 이 사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적 요인들이 겹쳐 있지만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너무 적은 돈’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경제갈등으로 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습니다.

지난 5월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동향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이 아닙니다. 5월 기준으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이 각각 4.0%, 10.5%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4월의 출생아 수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월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증가율 기준으로 2015년 12월 이후 2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연속 줄어들던 이혼 건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는데 그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 증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중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갈등의 가장 커다란 요인이 경제문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과 직결되는 ‘취업, 실업’과 ‘경제적 문제’를 합치면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불화를 경험한 비율이 28.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종 통계와 조사,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소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가 실질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며 이것이 사회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 인구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고(못하고), 출산도 안하고(못하고) 그리하여 사회는 늙어갑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남북관계 못지않게 우리 내부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여기에 더 많은 집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주일에 최장 52시간 근무를 내용으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놓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팽팽한 줄다리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정에서 보여 질까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내실을 기하여 우리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토대를 건전하고 튼튼하게 뒷받침해주도록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실천을 기대해 봅니다.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지정한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2017년 12월 현재까지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및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1,640명의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력적인 성행과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담종결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를 포함한 행동적인 측면의 변화, 피해자와의 관계적 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담의 효과성을 이미 살펴본바 있으며, 이는 상담의 효과성 검증에 위한 기초자료로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상담의 효과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과 동시에 가정폭

력 관련 상담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가정폭력 상담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첫째, 2017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71명에 대한 항목별 분석을 통해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 상담요인 그리고 상담을 통한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에 의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개월간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을 종결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 부부 117쌍¹⁾이 조사분석 대상이 되었다.

* 지난 6월 29일 열린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로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을 주제로 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본소의 조사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한다. 전문은 본소 홈페이지에서 <http://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으며, 토론회 관련 소식은 31면 참조.

1)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 115명(98.3%), 여성 2명(1.7%)이었다.

제 2 절 연구방법

첫째, 2017년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이 종료된 행위자 117명에 대하여 각 가정법원으로부터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문 및 검찰로부터의 상담위탁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둘째,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을 종결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1일까지 3주간 이루어졌으며, 부부 117쌍의 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2017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분석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남녀별

행위자 171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37명(80.1%), 여성이 34명(19.9%)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24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구분 성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남 성	137	80.1	46	26.9
여 성	34	19.9	125	73.1
합 계	171	100	171	100

(2) 연령별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2.8%(56명)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경우도 40대가 32.2%(55명)로 가장 많았다.

구분 연령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대 미만	—	—	1	0.6
10 대	2	1.2	6	3.5
20 대	12	7.0	21	12.3
30 대	38	22.2	45	26.3
40 대	56	32.8	55	32.2
50 대	43	25.1	31	18.1
60대 이상	20	11.7	12	7.0
합 계	171	100	171	100

(3) 교육수준별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6.8%(63명)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이 39.8%(68명)로 가장 많았다.

구분 교육정도	행 위 자		피 해 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초졸이하	11	6.4	18	10.5
중 졸	22	12.9	13	7.6
고 졸	63	36.8	60	35.1
전문대졸	7	4.1	6	3.5
대 졸	62	36.3	68	39.8
대학원이상	6	3.5	6	3.5
합 계	171	100	171	100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7.4%(47명)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2.8%(56명)로 가장 많았다.

구분 직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주부	18	10.5	56	32.8
회사원	47	27.4	32	18.7
단순노무	34	19.9	18	10.5
자영업	34	19.9	22	12.9
전문직	9	5.3	17	9.9
기술직	7	4.1	4	2.3
운전	2	1.2	1	0.6
무직	19	11.1	12	7.0
학생	1	0.6	9	5.3
합계	171	100	171	100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24.6%(42명)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6.2%(79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월수입	행위자		피해자	
	수(명)	백분율(%)	수(명)	백분율(%)
100만원 미만	9	5.3	12	7.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2	24.6	39	22.8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6	15.2	14	8.2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9	22.8	19	11.1
500만원 이상	17	9.9	8	4.7
일정한 수입이 없음	38	22.2	79	46.2
합계	171	100	171	100

(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부부관계인 경우(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가 132명으로 77.2%를 차지하였으며, 부부 또는 부모자녀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였다.

구분 관계		수(명)	백분율(%)
부부관계	법률혼 부부	119	69.6
	사실혼 부부	13	7.6
	이혼 부부	4	2.3
부모-자녀 관계		28	16.4
기타 가족관계	남매 관계	5	2.9
	형제 관계	1	0.6
	자매 관계	1	0.6
합계		171	100

(7) 혼인형태별²⁾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79.6%(105명)로 가장 많았다.

혼인형태	수(명)	백분율(%)
(남)초혼-(여)초혼	105	79.6
(남)재혼-(여)초혼	6	4.5
(남)초혼-(여)재혼	9	6.8
(남)재혼-(여)재혼	12	9.1
합계	132	100

(8) 동거기간별³⁾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25.8%(34명)로 가장 많았다.

동거기간	수(명)	백분율(%)
1년 미만	2	1.5
1년 이상 ~ 5년 미만	27	20.4
5년 이상 ~ 10년 미만	33	2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34	25.8
20년 이상 ~ 30년 미만	16	12.1
30년 이상	20	15.2
합계	132	100

2) 혼인형태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2명)에 국한하였다.

3) 동거기간별 분석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인 경우(132명)에 국한하였다.

2. 행위자의 폭력유형 및 폭력수준에 따른 분석

〈 폭력유형별 분석 〉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6% (9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⁴⁾이 18.8%(32명)로 나타났다.

(2) 폭력행위의 정도⁵⁾

행위자 171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는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쉽다.

구 분		수	백분율
폭 력 유 형		(명)	(%)
부부관계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95	55.5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18	10.5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9	5.3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에 대한 남편의 맞대응	4	2.3
	아내 및 자녀 폭력	9	5.3
부모-자녀 관계	자녀 폭력	23	13.4
	부모 폭력	5	2.9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에 대한 부모의 맞대응	1	0.6
기타관계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	2	1.2
	동생에 의한 누나폭력	2	1.2
	언니에 의한 동생폭력	1	0.6
	형에 의한 동생폭력	1	0.6
	오빠에 의한 동생폭력에 대한 동생의 맞대응	1	0.6
합 계		171	100

〈 폭력행위 정도에 따른 분석 〉

항 목	폭력동반 유무	
	없음	있음
언어 폭력	—	181(100)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181(100)
경미한 폭력	24(14.0)	147(86.0)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16(67.8)	55(32.2)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121(70.8)	50(29.2)
4. 피해자를 거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122(71.3)	49(28.7)
5. 피해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48(28.1)	123(71.9)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47(27.5)	124(72.5)
심한 폭력	38(22.2)	133(77.8)
7.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79(46.2)	92(53.8)
8. 피해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41(82.5)	30(17.5)
9. 피해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1(47.4)	90(52.6)
10. 피해자 목을 졸랐다.	136(79.5)	35(20.5)
11. 피해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44(84.2)	27(15.8)
12. 피해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145(84.8)	26(15.2)

4)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에는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과 자녀폭력이 동시에 수반된 경우(9명, 5.3%)도 포함되었다.

5) 행위자의 폭력행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Straus(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 Tactics Scale : CTS)를 수정 및 보완하여 언어폭력(1문항), 경미한 신체폭력(5문항), 심한 신체폭력(6문항)의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6%(147명),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7.8%(133명)였고, 이 중 칼이나 도끼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도 15.8%(27명)에 달했다.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1) 폭력행사 원인 (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7.5%, 135건)로 나타났다.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폭력적인 대화, 특히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18.7%, 67건)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0.4%(52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폭력행사의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15%, 54건)이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인 거짓

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는 8.9%(32건)로 2013년 이래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1) 상담대상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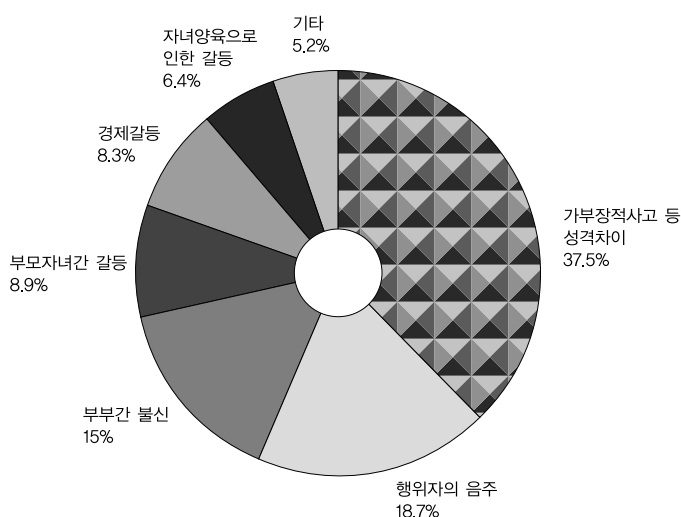
상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그리고 자녀 또는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9.5%(153명)로 나타났다.

구 분	수 (명)	백분율(%)
상담대상자		
행위자 본인상담	18	10.5
행위자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상담	153	89.5
합 계	171	100

(2) 상담방법별

2017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1단계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행위자의 현재 개인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화해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상담 또는 부부상담/가족상담을 통하여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횟수는 행위자의 생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2017년도에는 1,884건의 개별상담, 108건의 부부상담, 92건의 가족상담



[그림 1. 폭력행사 원인]

이 실시되었다. 정신과 연계도 2건 진행되었다.

2단계 음주문제 상담은 음주문제가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알코올문제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2017년도에 음주문제 상담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8회로 137명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총 17회로 31명이 참석하였다.

3단계 집단상담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집단구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행위자 및 부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뿐만 아니라, 자녀폭력 행위자(부모) 집단상담을 별도로 상시 운영하였다. 행위자 집단상담은 매주 목요일 총 43회 실시되었으며, 총 214명이 참석하였다. 부부 집단상담은 총 43회 실시되었으며, 총 154명이 참석하였다. 자녀폭력 행위자 부모 대상 집단상담은 총 37회 실시되어 총 90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자녀대상 미술심리치료집단상담은 총 7회 실시되어 12명의 폭력노출 유아동이 참석하였다.

4단계 교육강좌인 「등지교실」은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2017년도에는 비폭력대화법을 주제로 총 11회의 등지교실 교육강좌가 실시되었고, 총 441명이 참석하였다.

5단계 부부캠프는 진행되어온 상담을 토대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부부 및 가족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1박2일(주말) 프로그램이다. 2017년에는 3월과 7월에 총 2차례의 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행위자 부부 44쌍과 그 자녀 27명 등 총 115명이 참석하였다. 부부캠프는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6단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은 6개월의 상담위탁기간 동안 일련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폭력인식에 대한 재검토 및 부부/가족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도에는 총 332명의

행위자 및 피해자가 최종 개별상담을 통하여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은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7년도에는 10회의 자조모임이 실시되었고 총 96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라오니 모임이 확장된 라오니 캠프를 진행하였다. 라오니 캠프를 통해 참석자들은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라오니 캠프에는 총 18명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참석하였다.

2017년에 상담이 종료된 171명 중 82.5%(141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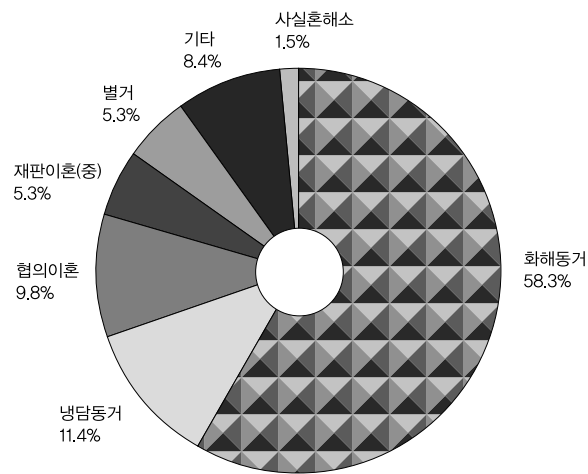
상 담 방 법 \ 구 분	수(명)	백분율(%)
개별상담	30	17.5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18	10.5
개별상담 · 집단상담	5	2.9
개별상담 · 교육프로그램 · 집단상담	118	69.1
합 계	171	100

5. 가정폭력상담의 단기 효과성 분석 :

상담종료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1) 부부관계 회복 여부

우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 132명의 상담종료시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관계를 회복하여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8.3%(77명)로 가장 많아 폭력재발을 막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상담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상담종료시 부부관계]

(2) 부모자녀관계 회복 여부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부모자녀인 경우(28명) 상담 종료 이후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거지를 달리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46.5(13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32.1%(9명)로 나타났다.

제 2 절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⁶⁾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본소에서 상담에 참여하고 상담을 종결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를 위한 전화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사례는 부부 117쌍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8.5%(45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8.5세였다. 피해자의 경우도 40대가 40.1%(47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46.3세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4.2%(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도 40.1%(47명)에 달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이 40.2%(47명)로 나타났다.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35%(41명)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전업주부가 50.4%(59명)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32.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284만원이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9.5%(58명)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소득은 93만원이었다.

한편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0.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동거기간은 1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

조사 대상자의 상담 종결 후부터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23.1%(27명)로 가장 많았고, 평균 상담종결 후 경과시간은 29.4개월이었다.

구 분	N(%)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27 (23.1)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9 (7.7)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2 (10.3)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20 (17.0)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12 (10.3)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21 (17.9)
48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10 (8.5)
60개월 이상 ~ 72개월 미만	1 (0.9)
72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2 (1.7)
84개월 이상	3 (2.6)
합 계	117 (100)

6)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가 완료된 117명은 모두 행위자가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6개월)을 받은 경우이다.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특 성	구 분	행위자 빈도(%)	피해자 빈도(%)
연 령	20대	2 (1.7)	4 (3.4)
	30대	18 (15.4)	25 (21.4)
	40대	45 (38.5)	47 (40.1)
	50대	40 (34.2)	36 (30.8)
	60대 이상	12 (10.2)	5 (4.3)
교육수준	초졸 이하	7 (6.0)	12 (10.3)
	중졸(중퇴포함)	14 (12.0)	10 (8.5)
	고졸(중퇴포함)	40 (34.2)	47 (40.2)
	전문대졸(중퇴포함)	9 (7.7)	5 (4.3)
	대졸(중퇴포함)	38 (32.4)	41 (35.0)
	대학원졸(중퇴포함)	9 (7.7)	2 (1.7)
직 업	주부	—	59 (50.4)
	회사원	40 (34.2)	19 (16.2)
	단순노무	21 (17.9)	14 (12.0)
	자영업	41 (35.0)	20 (17.1)
	전문직	3 (2.6)	4 (3.4)
	기술직	3 (2.6)	1 (0.9)
	무직	9 (7.7)	—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 (3.4)	3 (2.6)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7 (14.5)	29 (24.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8 (32.5)	16 (1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 (22.2)	7 (6.0)
	500만원 이상	23 (19.7)	4 (3.4)
	일정한 수입 없음	9 (7.7)	58 (49.5)
동거기간	1년 이상 ~ 5년 미만	16 (13.7)	
	5년 이상 ~ 10년 미만	22 (18.8)	
	10년 이상 ~ 20년 미만	36 (30.8)	
	20년 이상 ~ 30년 미만	26 (22.2)	
	30년 이상	17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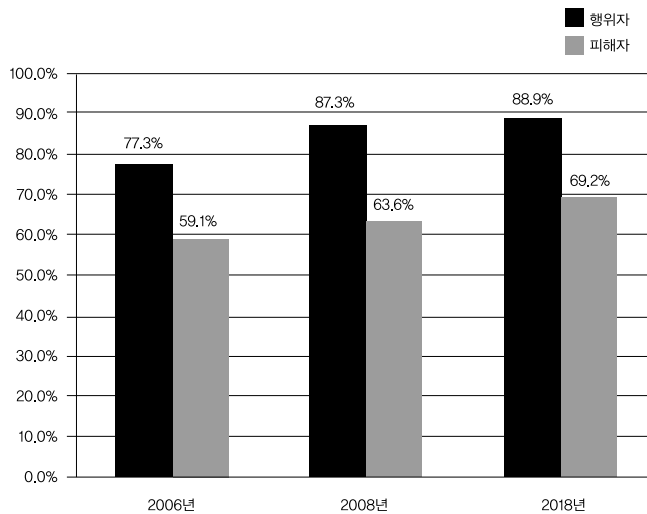
3. 폭력재발 여부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고 상담을 종결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행위자의 신체폭력 재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위자의 88.9%(104명), 피해자의 69.2%(81명)는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신체폭력 재발 여부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없음 N(%)	있음 N(%)	없음 N(%)	있음 N(%)
신체폭력	104 (88.9)	13 (11.1)	81 (69.2)	36 (30.8)

신체폭력 재발 여부	2006년		2008년		2018년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재발없음
	N(%)	N(%)	N(%)	N(%)	N(%)	N(%)
신체폭력	17 (77.3)	13 (59.1)	48 (87.3)	35 (63.6)	104 (88.9)	81 (69.2)

본소에서 2006년⁷⁾도와 2008년⁸⁾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상담효과성 연구와 비교해볼 때, 본 조사에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신체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수치는 다소 높았다.



[그림 3. 신체폭력 재발 여부 연도별 비교]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폭력 재발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위자의 48.7%(57명), 피해자의 31.6%(37명)은 언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언어폭력 재발 여부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N(%)	N(%)	N(%)
언어폭력	57 (48.7)	60 (51.3)	37 (31.6)	80 (68.4)

한편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행위자 104명, 피해자 81명에게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행위자의 45.2%(47명), 피해자의 54.3%(44명)는 무시나 모욕,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지만 다른 유형의 폭력 재발 여부〉

신체폭력 재발 여부	행위자 보고		피해자 보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N(%)	N(%)	N(%)	N(%)
언어폭력	57 (54.8)	47 (45.2)	38 (45.7)	44 (54.3)

구체적인 폭력행위별로 폭력재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주석 9)의 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상담참석 이전과 상담종결 이후의 폭력발생률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⁹⁾.

(1) 폭력재발 방지 요인¹⁰⁾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행위자 104명, 피해자 81명에게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었다. 행위자 및 피해자가 보고한 응답 결과는 신체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여한 요인을 개인적 요인, 관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 가정폭력관련 상담법제 개선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p186.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10년 절반의 성공과 남겨진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p172.

가. 행위자 보고

행위자는 공권력의 개입으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

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처벌이 주는 불편함으로 인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33.6%, 45명).

구 분	상세 내용	N (%)
개인적 요인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	34 (25.4)
	분노조절능력 향상	7 (5.2)
	내 자신에 대한 객관적 성찰	4 (3.0)
관계적 요인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31 (23.1)
	의사소통 원활	4 (3.0)
	남편, 아버로서의 역할 및 책임감 인식	5 (3.7)
환경적 요인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45 (33.6)
	별거, 이혼 등으로 아내와의 물리적인 분리	4 (3.0)
합 계		134 (100)

나. 피해자 보고

피해자는 자기 자신과 행위자 모두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 인해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54.8%, 62명).

9) 아래의 표에서는 상담참석 이전과 상담종결 이후의 각 항목별 폭력발생률을 비교하였다.

〈 상담참석 이전과 상담종결 이후의 폭력발생률 비교 〉

항 목	상담참석 이전		상담종결 이후	
	행위자 보고 폭력발생률	피해자 보고 폭력발생률	행위자 보고 폭력발생률	피해자 보고 폭력발생률
언어폭력	117(100)	117(100)	60(51.3)	80(68.4)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했다.	114(97.4)	117(100)	54(46.2)	76(65.0)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다.	116(99.1)	117(100)	56(47.9)	72(61.5)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111(94.9)	117(100)	48(41.0)	67(57.3)
경미한 신체폭력	97(82.9)	110(94.0)	13(11.1)	36(30.8)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수었다.	75(64.1)	105(89.7)	5(4.3)	30(25.6)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69(59.0)	102(87.2)	9(7.7)	25(21.4)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58(49.6)	98(83.8)	6(5.1)	19(16.2)
심한 신체폭력	39(33.3)	81(69.2)	8(6.8)	22(18.8)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33(28.2)	73(62.4)	4(3.4)	18(15.4)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했다.	10(8.5)	52(44.4)	4(3.4)	12(10.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6.8)	49(41.9)	—	6(5.1)
칼(가위)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10(8.5)	46(39.3)	2(1.7)	3(2.6)

10)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임.

구 분	상세 내용	N (%)
(행위자의) 개인적 요인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	27 (23.8)
	행위자의 분노조절능력 향상	2 (1.8)
	행위자의 단주 또는 절주행동	2 (1.8)
관계적 요인	피해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	13 (11.5)
	의사소통 원활	4 (3.6)
환경적 요인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	62 (54.8)
	별거, 이혼 등으로 아내와의 물리적인 분리	3 (2.7)
합 계		113 (100)

(2) 폭력재발 요인

언어폭력을 포함한 신체폭력이 재발되었다고 응답한 행위자 60명, 피해자 80명에게 폭력재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과 분노조절 실패로 인해 폭력이 재발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행위자 66.7%, 40명 / 피해자 73.8%, 59명).

4. 관계회복 여부

(1) 행위자 보고

행위자의 89.7%(105명)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105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점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42.9%).

〈 행위자 보고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좋아진 점 〉

구 분	N (%)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관점의 전환	45 (42.9)
의사소통의 양과 질 개선	26 (24.8)
분노조절 능력의 향상	15 (14.3)
음주문제 개선	11 (10.4)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	8 (7.6)
합 계	105 (100)

(2) 피해자 보고

피해자의 79.5%(93명)는 행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행위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응답한 93명은 행위자

〈 행위자 보고 -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정도 〉

구분	전혀 회복 되지 않았다										매우 회복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도	12 (10.3)	10 (8.5)	5 (4.3)	4 (3.4)	1 (0.9)	13 (11.1)	8 (6.8)	20 (17.1)	22 (18.8)	11 (9.4)	11 (9.4)	117 (100)

〈 피해자 보고 - 행위자와의 관계회복 정도 〉

구분	전혀 회복 되지 않았다										매우 회복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도	24 (20.5)	8 (6.8)	4 (3.4)	7 (6.0)	4 (4.5)	13 (11.1)	9 (7.7)	14 (12.0)	24 (20.5)	6 (5.1)	4 (3.4)	117 (100)

가 폭력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게 됨으로써 신체적 폭력이 중단된 점을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42.9%). 신체적 폭력의 중단이 부부관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피해자 보고 - 행위자와의 관계에서 좋아진 점¹¹⁾ 〉

구 분	N (%)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 신체적 폭력 중단	50 (31.2)
행위자의 무시모욕적인 언어습관의 변화 등 의사소통 개선	36 (22.5)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증가	36 (22.5)
행위자의 분노조절능력의 향상	23 (14.4)
행위자의 음주문제 개선	15 (9.4)
합 계	160 (100)

5.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 여부

상담이 종결된 이후 현재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물었다.

〈 행위자 보고 - 분노조절 능력 개선 정도 〉

구분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 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도	4 (3.4)	2 (1.7)	2 (1.7)	1 (0.9)	1 (0.9)	13 (11.1)	10 (8.5)	22 (18.8)	28 (23.9)	23 (19.7)	11 (9.4)	117 (100)

11)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임.

(1) 행위자 보고

행위자의 96.6%(113명)은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행위자가 보고한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에 대한 평균 점수는 7.1점이었다. 이는 이전에 비해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종결된 이후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이 7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113명은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게 되어 화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달래주고, 일단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타임아웃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외부자극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반응이 달라진 점을 꼽았다(60.1%). 즉 상담을 통해 분노조절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분노상황에서 대안 행동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행위자 보고 -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된 이유 〉

구 분	N (%)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대안 행동 모색	68 (60.1)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어서	38 (33.7)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7 (6.2)
합 계	113 (100)

(2) 피해자 보고

피해자의 88%(103명)가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자가 보고한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에 대한 평균 점수는 5.6점이었다. 이는 상담참여 이전에 비해 상담종결 이후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5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103명은 행위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45.7%).

6. 현재 갈등요인¹²⁾

상담이 종결된 이후 행위자 자신의 행동변화가 일어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피해자와의 갈등요인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1) 행위자 보고

행위자는 현재 피해자와의 갈등요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성격차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28%). 피해자의 변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한 의견차이, 자신에 대한 무시와 의심의 말이나 행동, 피해자가 가사에 소홀할 경

〈 피해자 보고 -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 개선 정도 〉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매우 개선되었다	계
	0	1	2	3	4	5	6	7	8	9	10	
빈도	14 (12.0)	9 (7.7)	8 (6.8)	1 (0.9)	3 (2.6)	9 (7.7)	11 (9.4)	22 (18.8)	20 (17.1)	12 (10.3)	8 (6.8)	117 (100)

〈 피해자 보고 -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된 이유 〉

구 분	N (%)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47 (45.7)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대안 행동 모색	26 (25.2)
상담을 통해 배우자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되어서	24 (23.3)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음주문제 개선	6 (5.8)
합 계	103 (100)

12)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임.

우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힘들고 화가 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 행위자 보고 - 현재 피해자와의 갈등요인 〉

구 분	N (%)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성격차이	40 (28.0)
특별히 어려운 문제없음	30 (20.9)
경제 갈등	27 (18.9)
자녀와 관련된 문제	17 (11.9)
부부간 신뢰회복	15 (10.5)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	11 (7.7)
원가족과의 갈등	3 (2.1)
합 계	143 (100)

(2) 피해자 보고

피해자는 경제 갈등을 현재 행위자와의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꼽았다(27.7%). 행위자가 음주, 도박, 다단계 등에 빠져 가정경제를 등한시하거나(26명), 행위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인한 갈등(20명)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피해자 보고 - 현재 행위자와의 갈등요인 〉

구 분	N (%)
생활비 미지급 등 경제 갈등	46 (27.7)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45 (27.1)
음주문제로 인한 갈등	22 (13.3)
원가족과의 갈등	15 (9.1)
특별히 어려운 문제없음	14 (8.4)
폭력의 재발	11 (6.6)
자녀와 관련된 문제	7 (4.2)
부부간 신뢰회복	6 (3.6)
합 계	166 (100)

7.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제안¹³⁾

(1) 행위자의 제안

구 분	N (%)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	77 (47.2)
피해자 상담 의무화	35 (21.5)
상담처분의 긍정적인 측면 인식 필요	27 (16.6)
상담처분 종결 후 지속적인 follow-up	7 (4.3)
상담소의 물리적인 환경 개선	5 (3.0)
가정사에 법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5 (3.0)
상담처분 기간의 확대	4 (2.5)
상담처분 기간의 축소	3 (1.9)
합 계	163 (100)

대다수의 행위자는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47.2%). 행위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① 집단상담을 확대운영(59.5%, 26명), ② 개별상담의 횟수 확대(24.3%, 18명), ③ 자녀상담 병행 등 가족상담 병행(9.5%, 7명)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는 폭력을 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상담이 병행되어야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21.5%).

(2) 피해자의 제안

구 분	N (%)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	61 (35.8)
상담처분이 법적 제재라는 확실한 인식 필요	49 (28.9)
상담처분 종결 후 지속적인 follow-up	30 (17.7)
피해자 상담 병행확대	25 (14.7)
가정폭력의 성행교정 및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정부지원확대	5 (2.9)
합 계	170 (100)

13) 중복응답이 가능한 항목임.

피해자들의 경우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35.8%). 구체적인 내용, ① 개별상담의 횟수 확대(30.5%, 18명), ② 집단상담 확대운영(15.3%, 9명), ③ 부부캠프를 확대운영(10.2%, 6명), ④ 음주문제 상담 전문화(10.2%, 6명), ⑤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확대운영(8.5%, 5명)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상담처분이 법적 제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상담처분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8.9%).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본소에 상담위탁되어 6개월(상담위탁 보호처분) 또는 10~40시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을 받고 2017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171명에 대한 상담통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2008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상담을 종결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117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행위자의 폭력재발 여부 및 관계적 변화 등의 조사를 통하여 상담효과성을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폭력이 줄었다(행위자 보고 88.9%, 피해자 보고 69.2%).

둘째, 언어폭력이 줄었다(행위자 보고 48.7%, 피해자 보고 31.6%).

셋째, 신체폭력은 재발하지 않았지만, 언어폭력은 있었다(행위자 보고 45.2%, 피해자 보고 53.2%).

넷째, 폭력재발 방지 요인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공권력의 개입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식을 꼽았다(행위자 보고 33.6%, 피해자 보고 54.8%).

다섯째, 언어폭력을 포함한 신체폭력이 재발된 경우 폭력 재발 요인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 실패를 꼽았다(행위자 보고 66.7%, 피해자 보고 73.8%).

여섯째, 행위자의 89.7%(105명), 피해자의 79.5%(93명)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을 관계회복 요인으로 꼽았고(42.9%),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에 대해 확실히 인식함으로써 신체적 폭력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1.2%).

일곱째, 행위자의 분노조절 능력이 개선되었다(행위자 보고 96.6%, 피해자 보고 88%). 행위자는 상담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발생하는지 인식하고 대안의 행동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 반면(60.1%), 피해자는 행위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참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45.7%).

여덟째, 현재 갈등요인으로 행위자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성격차이를 꼽았으며(28%), 피해자는 행위자가 가정경제를 등한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문제로 인한 갈등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27.7%).

아홉째, 행위자와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폭력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은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이고, 바로 그 점이 행위자의 폭력재발을 방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라는 점에 대하여 행위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확산, 정착될 필요가 있

으며, 실제 운용과정도 이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조사에서 폭력이 재발된 요인으로 행위자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과 분노조절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행위자 보고 66.7%, 피해자 보고 73.8%), 가정폭력상담에 가부장적인 사고 및 분노조절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폭력상담의 효과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시 피해자 상담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하여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의견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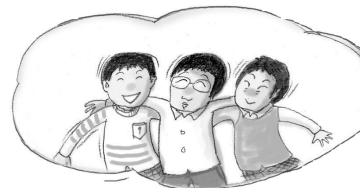
찰, 검찰, 법원 등의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인 ‘인권보호’와 ‘가정보호’의 두 가지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은 폭력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담소에서의 사후관리는 폭력재발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 상담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행위자를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일선 상담소의 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이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차연실 상담위원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및 가정폭력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 및 가정폭력 관련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양 현 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면서

한 사람의 성(姓)은 그저 상징적이기만 한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성본체계란 상징적인 약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선고한 바 있다.¹⁾ 하지만, 프랑스 정신분석학자 라캉(J. Lacan)에 의하면 ‘상징계(the symbolic)’는 언어와 기호의 체계들, 즉 상징적 질서체계를 일컫는다. 인간들은 적절한 언어와 기호를 가지지 못하면, 그 대상을 이성화 합리성의 세계에서 사유할 수가 없고, 실정법의 다양한 법규들은 이 상징계의 탁

월하고 대표적 사례이다.

라캉을 계승한 페미니스트 철학자 이리가레이(L. Irigaray)는 ‘어머니, 모성, 그리고 모계를 표상하기 위한 상징(계)의 결여’를 문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姓)과 같은 기호를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신체, 피, 자궁, 태반 그리고 출산의 ‘경험’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²⁾ 필자는 부계성본원칙에 따른 어머니 계통 상징의 부재에 따라 한국법과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의 피는 ‘비어있는 피’로서만 존재해 왔다고 표현해 왔다.³⁾

** 지난 5월 11일 열렸던 심포지엄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지난 6월호 <가정상담> 28면 참조.

- 1) 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 5·6 결정. 한편, 본 결정에서는 민법 제781조 제1항(2005년 3월 5일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이전의 규정)을 부성주의(父姓主義) 규정이라고 호명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법의 성본체계는 단지 아버지의 성(姓)이 아니라 부계(父系) 계통의 표지(標識)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부계성본주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 2) Luce Irigaray, “Each Sex Must Have Its own Rights” & “Body against Body: In Relation to the Mother,” *Sexes and Genealogies*, Gillian C. Gill (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3) 양현아,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한국여성학>, 제16권 제1호, 2000; Hyunah Yang, “Imaginary Construction of the Mother’s ‘Empty Blood’: Patrilineal Surname Law in Korea and Its Significance” “Surname Issues’ in Emerging Feminist Jurisprudence in East Asia”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서울대, 여성연구소 주최, 미간행 발표문, 2017.11.24.

실제로, 민법의 부계 성분 규정은 호주제도보다 더 긴 역사와 유래를 가진 대표적인 ‘전통’의 입법화, 다시 말해 근대 속에서 다시 기입(記入)된 전통의 실정법화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한국법에서 어머니의 성분을 기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야말로 한국의 여성주의 법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근본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CEDAW)과 한국의 유보조항

(1) CEDAW의 의의

CEDAW는 1979년 12월 18일 제34회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2013년 8월10일 현재 187개라는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 국제인권협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3년 5월 25일에 본 협약에 서명하고 다음 해인 1984년 12월 18일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에 발효하였다.⁴⁾

본 협약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고, 모성보호가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의미에 주목하여 그동안 국제인권법이 가진 남성중심성과 성맹성(gender-blindness)을 극복하고 있다.⁵⁾ 다

른 한편, 성차별적이고 성역할 구분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가 갖는 성차별적 관습과 고정관념, 관행 등을 철폐할 것 역시 요청하고 있다(특히 협약 제2조와 제5조).

(2) 한국정부의 유보 조항

한국정부는 협약의 비준과 함께, 협약 제9조, 제16조 제1항의 c, d, f, g 조항을 유보하였다.⁶⁾ 여성차별철폐협약이 한국법과 충돌함으로써 적용 유보를 한 조문들은 주로 혼인,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가족’의 영역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한국정부가 2018년 현재까지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제16조 제1(g)항 뿐이다. 2011년 CEDAW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 안에 위 조항에 대한 유보철폐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2018년 2월 협약 제16조 제1(g)항에 대한 유보는 협약의 목적 및 취지와 양립할 수 없고 따라서 허용되지 않으며 철폐되어야 한다고 재차 권고하였다.

3. 2005년 민법상 자(子)의 성분 조항의 개정

2005년 3월 국회는 호주제도를 완전히 삭제한 역사적인 민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때 제781조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조문도 수정되었다.⁷⁾

이러한 개정은 여러 변화들을 담고 있다.⁸⁾ 그것은 첫째,

4)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국제인권법의 남성중심성과 ‘여성인권(Women’s human rights)’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Hilary Chalkesworth, Christine Chinkin, & Shelly Wright,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8, no.4, 1991, pp.613-645. CEDAW에 의해 부과되는 국가 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은 다음을 참고할 것[Rebecca J. Cook, “State Accountability Under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ebecca Cook(ed.), Human Rights of Wom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6) http://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sg_no=IV-8&chapter=4&lang=en

7) 2005. 3. 31. 민법개정법률 (법률 제7427호), 본 개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 조문 이외에도 친양자제도의 창설, 친생부인제도의 정비 등은 본 협약과 관련성을 가진다.

8) 개정조문의 해설은 김상용 <가족법 연구 II>, 법문사, 2006 참고.

혼인신고 시 한국인 남편이 존재하는 부부라도 앞으로 출생할 자의 성분이 모성(母姓)의 성분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최초의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이 개정에 의해서 부(父)의 자(子) 인지 이후에도 인지 이전 성분(주로 모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셋째, 부, 모, 자의 청구가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 자(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천륜(天倫)으로 여겨지던 부성불변의 법칙의 예외를 조금이나마 허용함으로써 부계성분주의를 완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⁹⁾

하지만, 개정 조문 제781조는 양성 평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먼저, 모성의 선택이 오직 혼인신고 시에만 가능하여 절대 다수의 부부가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민법 개정 논의시기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에서는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¹⁰⁾ 이 안은 법무부 논의에서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

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¹⁾ CEDAW 유보조항을 철회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입법부에서 이미경 안이 아니라 법무부 안을 채택하였고, 법무부 논의에서도 동조 협약 유보에 대해서는 별반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¹²⁾

한편, 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동 조문 제6항에 도입되었던 바 ‘자의 성분의 변경’은 크게 ‘모의 성분으로의 변경’과 ‘계부(양부)의 성분으로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사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혼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도 모의 성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이다. 법무부 가족법개정 위원회는 본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자의 성분을 혼인 중에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 애매하고 불충분하게만 논의하였다.¹³⁾ 또한, 법이 시행된 후 법원 역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의 성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¹⁴⁾ 그런데, 계부나 양부(보통입양에 있어서)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부계성분주의가 가지는 일반적인 사회규범을 재차 확인하고 의존하는 것이다.¹⁵⁾ 환언하면, 성변경의 제도는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및 헌법 제36조 제1항 등)의 관점에서 도입되

9) 한국의 성분제도에 대한 고찰로는 정광현, <성씨논고: 조선가족법논고>, 이광신, <우리나라 민법상의 성씨제도 연구>, 법문사, 1973 참고.

10) [민법개정법률안 제865조의 2 제1항], 2003.5.27. 이미경의원 외 51인 발의 참고. 이외 노회찬의원외 9인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 제865조의 2 제1항도 동일함.

11) ‘법무부, 전계 회의록, 전계면 참고. 다른 한편, 당시 가족법 개정운동에서는 호주제 폐지 또한 이에 따른 대안적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에 주력했던 나머지 성분 문제가 중심적 의제였다고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성주의에 따른 성차별 효과 등 구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12) 법무부 전계 회의록 2003 참고.

13) 법무부 전계 회의록 318-319면 참고.

14) 이현재, 전계논문, 31면, 각주4) 재인용.

15) 이 점에서 광주지방법원의 성변경 사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한 연구에서도 모성으로의 변경이 계부성으로의 변경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것은 어머니의 단독 양육 상황과 그 상황의 지속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는 ‘남편이 있지 않은 한’에서만 모성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한다. 이 점에서 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신모의 결혼할 권리 내지 성관계를 맺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자녀를 위한 ‘현대판 수절 강요’라고 할 수 있다 [실증적 연구로는 이현재, 전계논문, 참고].

있다가보다는 이혼·재혼과 같은 사회적 현상의 증가에 따른 자녀와 가족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미흡함을 남긴다.

4.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22일 민법(2008년 1월 1일 시행 이전 민법) 제781조의 부계성본주의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12.22. 선고, 2003헌가5·6 결정).¹⁶⁾

다수의견은 크게 세 가지 이유 - 양계혈통을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일반의 의식, 부성 사용이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 을 들어 부계성본주의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부의 사망이라든가 부부의 이혼 이후 모가 단독으로 자녀를 돌보고 친권을 행사한다든가 혼외자의 인지 이후에도 부가 양육책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적' 경우에도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입양이나 재혼과 같은 가족관계의 변동에 있어 자녀의 계부의 성본으로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인격권의 침해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부성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2) 부계성본제도가 '다양한 가족'의 요청을 수용하는가

개정된 민법이 가지는 사회학적 의의를 새겨보자면 첫째, 제한적이거나 자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성본 변경의 길을 열어 둔 것은 누대를 거쳐 불변하는 부계계통 논리 속에서 사유하던 성본의 문법에 커다란 변동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성본 변경 신청시 법원의 주된 고려사항이 실제양육자, 친부와의 유대관계, 본인의 의사 등이어서 가족 개념의 변화도 발견된다.

둘째, 이혼, 재혼, 동성애가족, 독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함에 따라 가족성에 의해 대변되어야 할 가족 내지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정민법은 그 다양한 가족의 요청을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자녀라는 '정상 가족'의 형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¹⁷⁾

(3) 사회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가

현재의 다수의견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은 여전히 부성주의를 자연스러운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측정되지도 않은 채, 부성주의가 다수의 사회인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헌법 판단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16)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본 사건에서는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룸.

17) 예컨대, 재혼가족의 경우만 하더라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 비동거계부모가족, 동거계부모가족, 비동거계부가족, 비동거계모가족, 동거계부가족, 동거계모가족, 혼합계모형계부모가족,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무자녀계부모가족 등이 그것이다. 우리 정책은 이 중 동거계부모가족만을 '정상' 재혼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김은아, "재혼가족의 친족법적 과제", 『가족법연구』, 제24권 제3호, 2010).

오히려 부계성본주의의 강요는 사실혼가족, 한부모가족, 비혈연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더욱 '비정상화' 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족들이 출현하고 지속되는 것을 지양하는 힘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¹⁸⁾ 부계성본주의의 원칙과 어머니성 부여의 예외적 방안이란 다양한 가족형태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평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차별하며, 다양한 관계(부부관계, 모자관계, 동거관계 등) 속에서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남성의 존엄성과 자유도 제한할 것이다.

(4) 부계성본주의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는가

부계성본주의는 여성 개개인의 권리 차원을 넘어서서 아래에서 볼 것처럼 훨씬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젠더불평등을 심화하고 영속시켜 왔다.

첫째, 부계성본주의는 조부(祖父)의 성본만을 본인의 성본으로 채택하게 함으로써, 모계(母系)를 부계(父系)에 비해 차별하는 제도이다.¹⁹⁾ 결혼한 여성들은 이후 가족에서 자신과 '상이한 성본'을 가진 가족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는,

가족 안의 소수자가 된다. 남편가의 소수자가 되는 대부분의 여성후손(혹은 그들의 후손)들은 본인의 성본을 연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딸은 아들보다 덜 중요한 가족 성원이 되고 계통 계승을 위해 남아를 선호하게 만든다.²⁰⁾

둘째, 부계성본주의는 여성의 가족구성권리를 남성에 비해 크게 제한한다. 예컨대 우리 법원의 판단에서도 자의 성본을 모성으로 변경하려면 '현재 가족관계의 유지'라는 요건을 살펴보는 데, 이는 달리 말해 어머니의 재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즉, 자녀가 어머니성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일종의 '재혼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법원에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²¹⁾ 이는 여성의 혼인권리 나아가 성적 권리의 제한을 의미하며, 자녀를 위한 '현대판 수절 강요'라고 할 수 있겠다. 극히 예외적일 것이나(현행법에서와 같이 혼인신고 시 모성을 부여했을 경우) 친부의 성본으로의 변경신청을 한다 해도 부계성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친부의 재혼 의사를 법원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계부의 성본으로의 변경에서도 앞으로의 계부의 재혼(삼혼)의 자유 내지 성관계의 자유가 제한받지는 않을 것이다.

18) 예컨대, 어떤 남자가 동거를 선택했다 해도, 부성주의가 전반적 규범인 사회라면 동거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엄마성을 부여하여 '비정상성'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되므로, 법률혼을 하여 자녀에게 '정상성'을 줄 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19) 모계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계통으로 관념되지만 현실에서는 복수의 모계들이 존재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아버지의 아버지(조부) 이외에도 아버지의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라는 네 명의 조상이 존재하는데, 조부를 제외한 세 조상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모계' 조상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계의 복수성과 추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법 학자들은 모계를 단지 '자기의 어머니'로 한정하고 모계혈족은 '모의 부계'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병호, "민법상 모계혈족의 개념" <법률신문>, 1981, 이경희, "개정 민법상 친족에 관한 일고찰", <배경숙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1 등 참고].

20) 한국가족에서 아들보다 딸이 선호되며, 남편보다 아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담론이 있다. 실제로 가족연구에서 볼 때, 친근감을 가지는 가족관계는 부인의 친정 내지 자매 관계로 모계화 내지 양계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재경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근대적 경험," <한국여성학>, 제15권 제2호, 1999, 옥선화,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11호, 1998). 하지만 이러한 친근감의 이동이 성본과 같은 제도에서 여성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21) 이현재,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에 있어서 자의 복리," <가족법연구>, 2008, 제 22권 제2호, 67-69면 참고. 전계논문, 오승이, "판례를 통해 본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젠더법학, 제2권 제2호, 2010, 57면 참고.

셋째, 근본적으로 여성의 가족구성권의 제한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권리의 제한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여성에게 언제나 임신 가능성을 가져다주기에, 미혼의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과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성적 주체성이나 출산권리를 스스로 제한할 것이다.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성관계란 출산과 별개의 문제이고, 원치 않는(여자친구의) 출산에 의한 미혼부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행 조치가 제대로 구현된다고 가정할지라도 미혼부의 책임은 부계성본제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상과 같이 부계성본주의는 여성의 계통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모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아버지에 비해 차별하며, 여성의 가족구성권을 제한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제한하고 차별해 왔다. 이렇게 부계성본제도는 차별적인 젠더(여성과 남성)의 시스템을 표상할 뿐 아니라 구축에도 기여해 왔다.²²⁾ 이는 정확히 CEDAW가 금지하는 법적이고 관습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

5. 결론에 곁들이며

오늘날 한국에서 성제도는 점점 더 고정된 부계계통의 기호에서 구체적인 가족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으로 그 의미가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성본체계는 계통보다는 개인(혹은 개별 가족)을 일컫는 지시자(indicator)가 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 같다. 이와 함께, 한국 가족의 형태와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도 진지하게 주목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혼가족, 동성가족, 국제결혼가족, 그리고 비혈연 가족 등의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부계계통의 표지'로서의 성본의 계승이라는 '규범'이 자신들의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소지가 많다.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의 성본문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평등 기준에 입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입법

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의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성긴 제안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첫째,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혼인신고 시에 모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물음 보다는 '엄마성' '아빠성' 중 어느 성을 자녀에게 부여할지에 대해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보다 공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성주의를 유지하는 한 협약의 해당 조문의 유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행 성본 제도를 온전히 양성 평등하게 하여 유보를 철회하는 방안이 있다.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성을 정하게 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에는 이르는 전단계로서 현재의 모성 부여 선택의 시점을 '첫 자녀의 출생신고 시'로 연기하는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자의 성본에 대해 부부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로 자의 성본을 부여하는 개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법 개정과 함께 어머니 성과 모계를 계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어머니 성본을 계승한 후손이 다시 어머니의 성을 좇는다면 그 때에야 외할머니계통으로 이어지는 '진정 모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국가법에 성본에 관한 강행규범을 두지 않는 방안이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부부가 혼인시 어떤 성본을 사용할까는 국가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들과 가족들이 자율적으로 또 가족상황에 알맞게 성본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젠더'라는 개념은 단지 여성과 남성이라는 양성을 지칭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성간의 권력 관계를 지칭하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구조를 나타낸다.



* 이번 호의 내용은 본소 변호사가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척의 소개로 생후 백일 정도 된 아기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방긋 웃는 아기에게 첫눈에 반해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 한 후 친자 식처럼 키웠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직후 생모가 집을 나갔고, 그런 사유로 부모는 이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이 생모는 집을 나간 후 단 한 차례도 아이를 만나러 오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생부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생부는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지인들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아이를 입양시켰던 것입니다.

아이는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고, 아이는 물론 주위 사람들 모두 의뢰인들을 아이의 친부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생부가 의뢰인들과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정부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생부가 재혼한 현재 부인이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급식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생부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이의 생부와 그 부인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이가 중학생이라 한참 예민한 사춘기를 지나고 있으나, 아이가 다 자라서 이러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생부와 그 부인은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이 이복형제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담소의 법률구조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1심은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판결 및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의뢰인들이 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이 발생한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파양에 의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로써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생부에게는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생부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생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생부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

쇼스타코비치와 레닌그라드 전투

M.T. 앤더슨 지음, 장호연 옮김,
2018, 돌베개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레닌그라드 전투는 보통 레닌그라드 포위전 또는 레닌그라드 봉쇄라 하는데 내용적으로 포위전이나 봉쇄가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북부집단군에 의한 레닌그라드 포위작전이다. 포위전은 1941년 9월 8일 마지막 육상 연결 통로가 끊어지면서 시작되었다. 붉은 군대가 1943년 1월 18일 도시로 연결되는 작은 회랑 부분을 해방하지만, 완전한 포위전 종료는 전투 시작 872일 만인 1944년 1월 27일 끝났다. 이 전투는 역사상 가장 길고 파괴적인 포위전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많은 약 3백 만 명의 사상자를 낸 도시 전투로 꼽힌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어 죽었다. 엄혹한 상황에서 인간은 그 밑바닥을 드러내기도 하고, 숭고한 인간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봉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와 문화를 지키고자, 미술관의 작품을 철거하여 산악지방으로 보내고, 노동자들은 레닌그라드를 건설한 표토르 대제의 청동 기마상을 훔쳐 나무판자로 덮어 보호했다. 이 조각상은 지금도 네바강을 바라보며 서있다. 하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현실은 인육을 먹는 정도로 참혹해졌고, 시신을 문물 기운조차 없어 길 곳곳에 시신들이 방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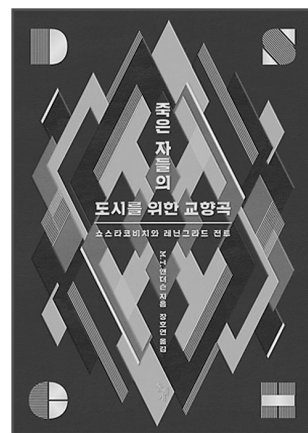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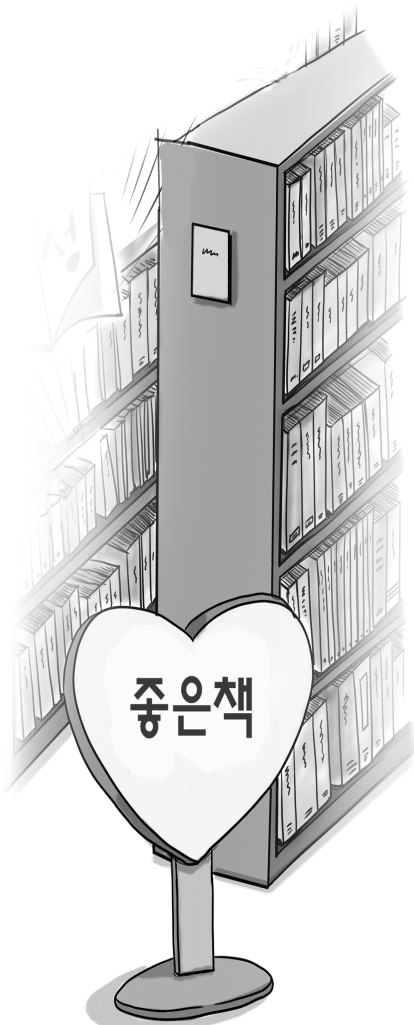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에서 당대의 음악가 쇼스타코비치(1906-1975)는 '레닌그라드 교향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7번을 썼다. 레닌그라드 교향곡의 초연은 소련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서방세계로 악보를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이야기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의 초연

은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교향악단이 진행했는데, 이 공연은 미국 전 방송국을 통해 중계되었고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식량 원조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레닌그라드에서의 공연 과정을 보여주는 책의 2부 '18.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 부분을 읽을 때에는 의식도 못하는 사이 눈물이 먼저 줄줄 흘러내리는 경험을 했다. 시민들에게 힘을 주고자, 굶주림에 지쳐 관악기를 불지도 못하는 연주자들과 팔을 들어 울림 힘조차 없는 지휘자가 모여 연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도 연주자들을 굶어 죽어가고, 시신을 묻고 와서 리허설을 진행했다. 마침내 봄이 오고 사람들은 도시를 치우고 곳곳에 채소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독일군의 시신을 돌리기 위해 작전을 감행하여 먼저 고성능 폭탄을 퍼부은 후 공연을 했다. 책에 의하면 "레닌그라드 전체가 그날 밤 음악을 들었다." 독일군도 들었다. 후에 한 독일군은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가 결코 레닌그라드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었습니다. ... 우리는 굶주림보다, 공포와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남으려는 의지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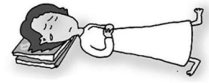
저자 M.T. 앤더슨은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폭 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책을 쓰고 있다. 책 뒤에 붙어있는 주석과 참고문헌의 볼륨이 글쓰기를 위한 저자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책 표지의 DSCH는 교향곡마다 남겨둔 쇼스타코비치의 자필 이니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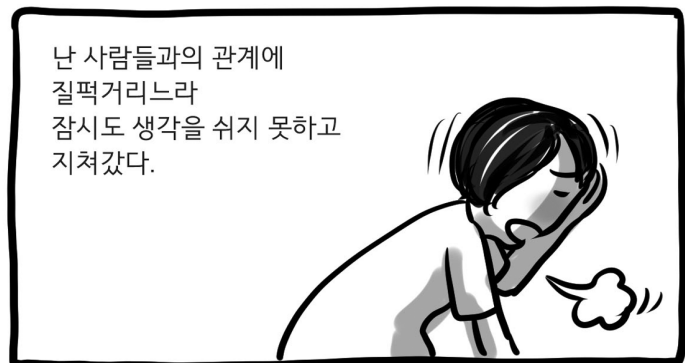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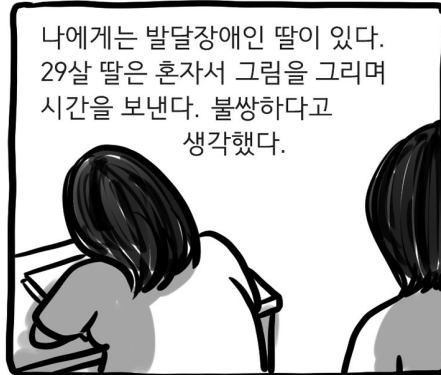
이 숙 현 편집부장



불쌍한 딸



글 | 그림 | 장차현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딸은
작가가 되었고
나는 불쌍해졌다.



나는 생각하며 살라고
교육받고 자랐지만
너무 많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있었다.
생각을 멈춰야한다!!!!



상·담·소·소·식



임시 이사회 개최

본소의 임시이사회가 지난 6월 21일 개최되었다. 이 날 임시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 전화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인사규정의 일부개정안 통과와 오는 2018년 9월 2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유임안이 의결되었다. 회의에는 김춘봉, 박양덕, 김의재, 차명희, 광배희, 조대연, 김명순, 임재연 이사가 참석했다.

•유임 이사

김춘봉/윤후정/박양덕/김의재/
장명수/김명순/김영옥/조대연/
김병후/임재연/차명희/
광배희 이사 (12인)

•유임 감사

한미영/최문원 감사 (2인)
(관련사진 2면)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 개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을 주제로

상담소에서는 지난 6월 29일 본소 강당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을 주제로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소는 1956년 창립 이래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 제정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한 것이다. 법의 시행 이후에도 본소는 관련 법제도 및 사회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담론과 법 개정 등 후속 논의를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으며, 주요한 대응책의 하나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병행해 왔다.

피해자 상담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며, 가해자 상담은 가해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동시에 성행교정을 통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변화가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가 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아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본소 광배희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본소의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토론자로 김진옥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양혜원 교수(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향순 상임대표(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조성균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등이 참석했으며, 관계기관 및 관심 있는 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관련사진 2면, 관련내용 6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6월 28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사랑, 분노’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 평범한 감정인데 원장님께서 분노의 유형을 나누어 설명해주시고 실제 사례를 들려주셔서 새롭고, 공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오는 7월 26일(목) “다름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소, 2018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월 2회 확대실시

– 6월 7일은 야외에서 모임 가져

본소에서는 2004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월 2회 확대실시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재발가능성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에는 장희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자기돌봄’이라는 주제로 강의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여성 12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겪고 있는 부부 및 가족갈등의 문제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여의도공원을 산책하였고, 나무 그늘 아래에 둘러앉아 친목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평소에 이런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 6.12 영등포 보현의 집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전규선/유혜경 상담위원
- 6.21. 서울모자의집-가정폭력피해자 강의 및 상담
- 복미영 상담위원
- 6.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가족법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 6.27. 강동구가정상담센터 가족법 교육
- 박소현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6월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최 전문가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6월 23일에 한일가족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한일가족법학회·한국가족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고, 27일에는 강동구가정상담센터의 자원상담가 양성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곽배희 소장,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 등

곽배희 소장은 6월 11일 헌법재판소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12일에는 여성신문사 창간 30주년을 맞아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고맙습니다

2018년 6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정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태주,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안서연, 유정아, 이혜민, 임주영, 전병규, 주소희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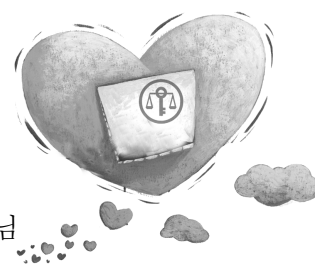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하영, 남서연, 박현조, 배소희, 이민주, 이수현, 차시온, 최슬지, 최희원, 한 솔, 구가은, 김도영, 김소희, 김유진, 백다슬, 채서현, 최승은, 허호재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박언덕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6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자녀 양육 안내를 실시하였다. 26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구리·남양주지부

6월 5일, 12일, 14일, 19일,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5일, 12일, 19일, 26일 구리시민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정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6월 21일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전국 사업수행기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9일, 23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를 실시하였다. 허노목, 이용원, 전하은, 조은희, 이정민, 엄요한, 이태현, 정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 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시법원 2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2회 실시하였다. 성남시 평생학습관, 성남중앙도서관, 성남지역 및 인근지역 각 동

주민센터 등에 11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25일 상담소, 쉼터 소장 및 실무자,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수연 변호사가 소송구조를, 김승구, 김정혜, 문대근,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6월 1일 인천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찰관들과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 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14일 인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주부 및 주니어를 대상으로 로스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6일 인천연수구청 사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수원지부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에 참석하였고, 5일 수원 지방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즈만에 참석하였다. 22일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준엽, 한승일, 이상훈, 박진호, 박진우, 이윤선, 장미애, 정원진, 최성중, 박지현, 허정택, 차명심, 서정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하였다.



울산지부

6월 21일 울산가정법원 부모교육 특강 및 이혼상담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4회 실시하였다. 6월 5일, 19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 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14일 전주지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7일 '2018 폭력추방 전주시민 하나로 문화제'에서 무료소송구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최대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이재경, 임유정, 이동건, 황은하, 김영옥, 심미숙, 고정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5월 28일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창원·마산지부

6월 8일 창원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일 창원·마산지부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오유경, 홍강오, 백경석, 민태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춘천지부

6월 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2018년 5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5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2,622건으로 본부가 6,553건, 지부가 6,069건이었다. 본부는 5,918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527건·소장 등 서류작성 60건·소송구조 48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119건·화해조정 849건·소장 등 서류작성 31건·소송구조 70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91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9%→1.0%), 사실혼해소(1.1%→1.7%), 위자료·재산분할(10.2%→11.4%), 친생자존부(2.3%→2.6%), 입양(1.7%→2.0%), 파혼(0.3%→0.4%), 혼인무효·취소(0.7%→0.9%), 이혼무효·취소(0.3%→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7%→4.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2%→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91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80건(18.2%), 전화상담 4,579건(77.4%), 통신 및 인터넷상담 258건(4.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8년 6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554		
법률상담 (5,808)		
면접	전화	통신
1,034	4,540	234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630	72	44

* 2018/6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4,240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553	1,080	4,579	258		지상 1	5,918	527	60	48
강릉 (033) 652-9555	144	121	17				138	5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35	34	76	1			111	222		2
군산 (063) 442-1560	108	18	41				59	47		2
대구 (053) 745-4501	396	212	31	5		출장 71	319	66	3	8
대전 (042) 520-5258	250	49	200				249		1	
동해 (033) 535-0188	99	22	77				99			
목포 (061) 273-2514	147		147				147			
부천 (032) 667-2314	334	75	212	1			288	46		
성남 (031) 707-6661	361	225	64			출장 22	311	43	4	3
송도 (032) 834-1369	327	59	122				181	123	4	19
수원 (031) 243-4600	446	152	129			출장 55	336	106	1	3
순천 (061) 753-9910	208	78	129				207			1
안동 (054) 856-4200	154	15	98				113	39		2
울산 (052) 246-9568	122	33	69				102	13	2	5
익산 (063) 851-5113	284	64	219				283			1
인천 (032) 865-1120	353	123	184				307	35	2	9
천주 (063) 244-2930	193	101	59	31			191			2
청음 (063) 535-3705	108	49	58				107		1	
제천 (043) 644-5690	91	27	64				91			
중구 (02) 2238-6554	522	335	187				522			
진주 (055) 746-7975	153	55	64	1			120	29		4
창원마산 (055) 261-0280	294	161	121				282	3	1	8
청주 (043) 257-0088	175	59	48				107	61	7	
춘천 (033) 257-4688	137	34	23			출장 79	136	1		
태백 (033) 554-4004	101	60	18			출장 23	101			
평택안성 (031) 611-4251	156	31	100			출장 10	141	10	5	
포항 (054) 283-7555	71	7	64				71			
지부총상담	6,069	2,199	2,621	39		출장 260	5,119	849	31	70
총 상담	12,622	3,279	7,200	297		출장 260 지상 1	11,037	1,376	91	118

** 2018/5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98,308건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외도로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343

담당 : 임주용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8세)와 피고(남, 78세)는 1965년 9월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원고가 첫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며 욕설을 하고 연탄집게, 허리 띠 등으로 구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혼인 이후 단 한 차례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한 직장에도 계속 다니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기를 반복하였다. 원고가 파출부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자녀들의 등록금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어, 큰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도 피고는 외박과 술을 즐기고 가족은 돌보지 않다가 1985년경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12.2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기 피해와 다단계판매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67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7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였다. 그 와중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 혼인하고 의지하며 살던 중, 친동생이 교통사고를 내 그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였지만 거래처 사장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채무는 더욱 증대되었다. 이 일로 장사를 그만 둔 신청인은 학력과 기술이 없어 취업이 어려웠고, 지인의 권유 끝에 다단계판매를 시작하였다. 주로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는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식품을 다량 구입하여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다량 구입한 건강식품은 잘 팔리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만 늘어갔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 친모가 사망하면서 신청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다. 결국 더 이상의 근로활동이 어렵게 된 신청인은 모든 걸 잃고 찌질방을 전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04.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도박으로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7-399

담당 : 박소영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0세)와 피고(남, 46세)는 2011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사건본인(남, 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습관적으로 도박을 했다. 2012년경 피고는 원고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2,000만 원을

변제해주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지노에 다녔고, 원고가 중국에 한 달간 머무는 동안에도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냈다. 원고가 임신 중이던 2013년 9월경 피고가 사채업자와 함께 집에 들어와 300만 원이 넘는 도박 빚을 갚아 달라고 하여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년경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수차례 드나들다 2015년 12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후 피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어린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힘들게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3.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3.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게 폐업 후 수급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신청인의 양육비 청구

법률구조 2017-403

담당 : 김세환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36세)과 상대방(남, 37세)은 슬하에 사건 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2005년 1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사건 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경기가 어려워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서, 현재는 수급비만으로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 현재 역도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사건본인의 꿈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

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광주가정법원 2018.4.2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8.4.2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재혼 후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7-453

담당 : 손명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2세)과 상대방(남, 42세)은 슬하에 사건 본인1(남, 15세)과 사건본인2(남, 12세)를 두었으나, 2009년 3월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구두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 후 9년 간 총 3년간만 양육비를 지급하였고, 이마저도 2017년 4월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아예 중단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님의 식당에서 일하며 얻는 월 100여만 원 남짓의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힘들게 키워왔으나, 식당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현재 구직 중에 있다. 이에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수급비만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18.4.1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8년 7월 21일(토) 오전 9시 ~ 7월 23일(월) 오후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장소 : 강원도 옥계 한국여성수련원
- ▶ 내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 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지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5.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변 물놀이」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7월 26일	6. 다름과 다양성
9월 27일	7. 외도에 대한 대처
10월 25일	8. 분노 조절 장애
11월 22일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12월 27일	10.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2018년 7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
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7월 9일/ 7월 23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동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
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7월 12일	평 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9월 13일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0월 11일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3일 자녀동반 캠프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
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
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생/활/법/률/강/좌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